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김태호·박대출·김성원

박정하 • 강민국 • 백종헌

박충권 • 김위상 • 임이자

곽규택·윤영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킬로미터"를 "1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	제2조(정의)
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	
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	
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u>5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u>15킬로미터</u>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	
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	
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	
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	
(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	
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	
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